

평 결 서

사 건 명 : 인천지방법원 [redacted]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 고 인 : [redacted]

이 사건의 배심원들은 다음과 같이 평결합니다.

다 음

1. 공소사실

피고인은 [redacted] 기자 [redacted], 피해자 신승준이 운영하는 산부인과 병원에서 '2012. 2. 1. 산모가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2014. 8.경부터 취재를 하고 지속적으로 기사를 작성하여 게재 하던 중,

2014. 11. 26. 00:42경 인터넷 신문 '자주민보(<http://www.jajuminbo.net>)' 사이트에 "온평구 신0준 산부인과 과실치사 기소만 3건"이라는 제목 하에, "-'무의료사고' 광고.. 유가족 '알았으면 갔겠다' 분노, (중략) 병원 측은 의료사고 당시에도 산모와 보호자에게 '산모가 입을 다물고 있어 산소 공급을 위한 바름 외 약물을 절대 쓰지 않는다' 강변했었다. 병원측은 약물투여로 인한 사망이 아닌 '양수색전증'을 사망원인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과수 검시결과 병원이 쓰지 않았던 프로포폴 등이 검출됨과 함께 이 병원이 '의료사고 없는 병원'이라고 한 광고가 허위임이 드러났다. 서울서부지방법검찰청은 '의료사고 없다는 광고가 거짓이었다'는 피의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은 해당 병원의 의료사고에 관한 검찰 기소내역이었다. 유가족이 검찰을 통해 받아본 신0준 원장의 기소내역에 따르면

'과실치사(사망)3건' '과실치상 1건'등 기소된 건만 4건에 이르렀다. 유가족은 "애초 의료사고 없는 병원이라는 허위광고에 원래 첫 아이를 분만했던 병원을 바꾸고 해당 병원을 찾았던 것이다. 처음부터 이렇게 산모가 죽어나가는 일이 3건 이상 있는 줄 알았다면 절대 은평구 신오준 산부인과에 둘째를 낳으려 가지 않았을 것이다. (중략)방송이 나간 이후 해당 병원은 본 기자에게 기사에 불만을 드러내며 24~25일 양일간에 걸쳐 30여건이 넘는 문자와 전화 등을 했다. 애초 기사에 대한 반론은 대표메일과 번호로 받겠다고 밝히며 '업무방해를 하지 말 것'을 고지했음에도 해당 병원은 무단으로 기자의 핸드폰으로 문자와 전화를 걸어왔다. (중략) "라는 기사를 작성하여 게재하고, 그 기사 내용 중에 검사처분란(혐의없음, 기소중지)을 삭제하여 수리내역이 마치 기소내역인 것처럼 편집된 피해자에 대한 '검찰사건 처분내역' 화면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사 등 죄명으로 4건이 기소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피해자의 범죄전력에 대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외에 그때부터 2015. 3. 21. 04:21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일시	장소	방법	게시글 내용	비고
1	2014. 11. 25. 00:42경	불상	자주민보 홈페이지 (www.jajuminbo.net)	은평구 신0준 산부인과 '과실치사 기소만 3전'이라는 제목으로 '연변, 사건번호, 수리일자, 피의자, 주민번호, 수리피명' 등이 입력된 검찰 사건조회 화면 출력물 게시	11쪽
2	2014. 11. 26. 02:15경	불상	서울의 소리 홈페이지 (www.amn.kr)	MBC 나온 그 은평구 신0준 산부인과 '과실치사 기소만 3전'이라는 제목으로 '연변, 사건번호, 수리일자, 피의자, 주민번호, 수리피명' 등이 입력된 검찰 사건조회 화면 출력물 게시	24쪽
3	2014. 11. 28. 23:40경	불상	인뉴스TV 홈페이지 (http://no11)	상동	58쪽
4	2014. 12. 23. 10:11경	불상	민주여린이 블로그 (http://blog.naver.com)	'연변, 사건번호, 수리일자, 피의자 주민번호, 수리피명' 등이 입력된 검찰 사건조회 화면 출력물 게시	41쪽
5	2014. 12. 29. 11:57경	불상	상동	상동	44쪽
6	2014. 12. 29. 11:58경	불상	담스클럽데이비 카페 (http://cafe.naver.com)	상동	35쪽
7	2015. 1. 6. 13:37경	불상	서울의 소리 홈페이지 (www.amn.kr)	신0준 산부인과 '산모사망 보도 기자 고소' 왜? 라는 제목으로 '연변, 사건번호, 수리일자, 피의자, 주민번호, 수리피명' 등이 입력된 검찰 사건조회 출력물 게시	30쪽
8	2015. 1. 6. 12:39경	불상	자주민보 홈페이지 (www.jajuminbo.net)	신승준 산부인과 '의료사고 보도기사에 민사소송' 왜? 라는 제목으로 '연변, 사건번호, 수리일자, 피의자, 주민번호, 수리피명' 등이 입력된 검찰 사건조회 출력물 게시	17쪽
9	2015. 1. 6. 14:42경	불상	담스클럽데이비 카페 (http://cafe.naver.com)	상동	46쪽
10	2015. 1. 6. 14:45경	불상	상동	상동	37쪽
11	2015. 3. 21. 04:29경	불상	민주여린이 블로그 (http://blog.naver.com)	경기자가 신0준 산부인과 건에 '0'에 처리해준 이유라는 제목으로 '연변, 사건번호, 수리일자, 피의자, 주민번호, 수리피명' 등이 입력된 검찰 사건조회 출력물 게시	52쪽

2. 적용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평결

유죄 : 5 명

무죄 : 2 명

※ 유·무죄에 관하여 배심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만장일치로 평결합니다.

유·무죄에 관하여 배심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리에 참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은 후에 다수결로 유·무죄의 평결을 하여야 합니다.

2016. 11. 8.

배심원 대표	4 번	오 [redacted] 북	(서명 [redacted] 인)
배심원	8 번	김 [redacted] 희	(서명 [redacted] 인)
배심원	6 번	박 [redacted] 주	(서명 [redacted] 인)
배심원	7 번	김 [redacted] 영	(서명 [redacted] 인)
배심원	5 번	임 [redacted] 니	(서명 [redacted] 인)
배심원	7 번	원 [redacted] 주	(서명 [redacted] 인)
배심원	2 번	최 [redacted] 인	(서명 [redacted] 인)

양 형 의 견 서

사 건 명 : 인천지방법원 [redacted]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 고 인 : [redacted]

■ 공소사실

피고인은 [redacted] 기지 [redacted] 사람으로, 피해자 신승준이 운영하는 산부인과 병원에서 '2012. 2. 1. 산모가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2014. 8.경부터 취재를 하고 지속적으로 기사를 작성하여 게재 하던 중,

2014. 11. 26. 00:42경 인터넷 신문 [redacted] 사이트에 "은평구 신0준 산부인과 과실치사 기소만 3건"이라는 제목 하에, "- '무의효사고' 광고. 유가족 '알았으면 갔겠다' 분노, (중략) 병원 측은 의료사고 당시에도 산모와 보호자에게 '산모가 입을 다물고 있어 산소 공급을 위한 바늘 외 약물을 절대 쓰지 않는다' 강변했었다. 병원측은 약물투여로 인한 사망이 아닌 '양수색전증'을 사망원인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과수 검시결과 병원이 쓰지 않았던 프로포폴 등이 검출됨과 함께 이 병원이 '의료사고 없는 병원'이라고 한 광고가 허위임이 드러났다. 서울서부지방법검찰청은 '의료사고 없다는 광고가 거짓이었다'는 피의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은 해당 병원의 의료사고에 관한 검찰 기소내역이었다. 유가족이 검찰을 통해 받아본 신0준 원장의 기소내역에 따르면 '과실치사(사망)3건' '과실치상 1건'등 기소된 건만 4건에 이르렀다. 유가족은 "애초 의료사고 없는 병원이라는 허위광고에 원래 첫 아이를 분만했던 병원을 바꾸고 해당 병원을 찾았던 것이다. 처음부터 이렇게 산모가 죽어나가는 일이 3건 이상 있는 줄 알았다면 절대 은평구 신0준 산부인과에 들례를 남으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중략)말씀이 나간 이후 해당 병원은

본 기자에게 기사에 불만을 드러내며 24-25일 양일간에 걸쳐 30여건이 넘는 문자와 전화 등을 했다. 애초 기사에 대한 반론은 대표메일과 번호로 받겠다고 밝히며 '업무방해를 하지 말 것'을 고지했음에도 해당 병원은 무단으로 기자의 핸드폰으로 문자와 전화를 걸어왔다. (중략) "라는 기사를 작성하여 게재하고, 그 기사 내용 중에 검사처분란(혐의없음, 기소중지)을 삭제하여 수리내역이 마치 기소내역인 것처럼 편집된 피해자에 대한 '검찰사건 처분내역' 화면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사 등 죄명으로 4건이 기소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피해자의 범죄전력에 대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외에 그때부터 2015. 3. 21. 04:21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일시	장소	방법	게시글 내용	비고
1	2014. 11. 26. 00:42경	불상	자주민보 홈페이지 (www.jajuminbo.net)	은평구 신O준 산부인과 '과실치사 기소한 3건'이라는 제목으로 '연변, 사건번호, 수리일자, 피의자, 주민번호, 수리피명' 등이 입력된 검찰 사건조치 화면 스크린샷 게시	11쪽
2	2014. 11. 26. 02:15경	불상	서울의 소리 홈페이지 (www.amn.kr)	MBC 나온 그 은평구 신O준 산부인과 '과실치사 기소한 3건'이라는 제목으로 '연변, 사건번호, 수리일자, 피의자, 주민번호, 수리피명' 등이 입력된 검찰 사건조치 화면 스크린샷 게시	24쪽
3	2014. 11. 28. 23:40경	불상	인뉴스TV 홈페이지 (http://no11)	상동	58쪽
4	2014. 12. 23. 10:11경	불상	민주여권이 블로그 (http://blog.naver.com)	'연변, 사건번호, 수리일자, 피의자 주민번호, 수리피명' 등이 입력된 검찰 사건조치 화면 스크린샷 게시	41쪽
5	2014. 12. 29. 11:57경	불상	상동	상동	44쪽
6	2014. 12. 29. 11:58경	불상	맘스윅픽케이비 카페 (http://cafe.naver.com)	상동	35쪽
7	2015. 1. 6. 13:37경	불상	서울의 소리 홈페이지 (www.amn.kr)	신O준 산부인과 '산모사망 보도 기자 고소' 제? 라는 제목으로 '연변, 사건번호, 수리일자, 피의자, 주민번호, 수리피명' 등이 입력된 검찰 사건조치 스크린샷 게시	30쪽
8	2015. 1. 6. 12:39경	불상	자주민보 홈페이지 (www.jajuminbo.net)	신송준 산부인과 '의료사고 보도기사에 민사소송' 제? 라는 제목으로 '연변, 사건번호, 수리일자, 피의자, 주민번호, 수리피명' 등이 입력된 검찰 사건조치 스크린샷 게시	17쪽
9	2015. 1. 6. 16:42경	불상	맘스윅픽케이비 카페 (http://cafe.naver.com)	상동	46쪽
10	2015. 1. 6. 14:45경	불상	상동	상동	37쪽
11	2015. 3. 21. 04:29경	불상	민주여권이 블로그 (http://blog.naver.com)	정기자가 신O준 산부인과 건에 'O'에 처리해준 이유라는 제목으로 '연변, 사건번호, 수리일자, 피의자, 주민번호, 수리피명' 등이 입력된 검찰 사건조치 스크린샷 게시	52쪽

■ 적용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소사실에 대한 양형 의견

징역 년 월 명(인원수)

징역 년 월 명(인원수)

징역 년 월 명(인원수)

기타(집행유예, 벌금 등) 400만원 벌금 4 명(인원수)

기타(집행유예, 벌금 등) 300만원 벌금 2 명(인원수)

기타(집행유예, 벌금 등) 100만원 벌금 1 명(인원수)

이 사건의 배심원들이 위와 같은 양형의견을 개진하였음을 확인함.

2016. 11. 8.

재판장 판사 김진철